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33

발의연월일: 2020. 8. 13.

발 의 자 : 송언석 · 김정재 · 이태규

윤재옥 • 임이자 • 박덕흠

권명호 · 김석기 · 정희용

성일종 · 윤두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난간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 과거에 일반적으로 설치하였던 '외기에 면하는 난간'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의 형태가나타나고 있음.

이에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,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의2 및 제106조제3항제2호의2 신설).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2(국기게양시설의 설치)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치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(이하 "국기게양시설"이라 한다)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
- 1. 주택의 옥외에 외기(外氣)에 면하는 난간이 설치된 경우 : 각 세 대별 해당 난간
-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: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 입문

제106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40조의2에 따른 국기게양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기게양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

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국기게양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국기게양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 후 1 년 이내에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기게양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40조의2(국기게양시설의 설치)
	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따른 위치에 국기를 게
	양할 수 있는 시설(이하 "국기
	게양시설"이라 한다)을 1개소
	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	1. 주택의 옥외에 외기(外氣)에
	면하는 난간이 설치된 경우 :
	각 세대별 해당 난간
	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
	경우 : 주택단지 안의 각 동
	지상 출입문
제106조(과태료) ①・② (생략)	제10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
	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3
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•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<u>2의2. 제40조의2에 따른 국기게</u>
	양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